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322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승주, 나미라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9. 접수 제1731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21. 1. 7. 체결된 확정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7. 접수 제58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E은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919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C을 상대로 판결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C은 2021.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일반채권자인 E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E의 C에 대한 채권 중 1/2은 E의 사망으로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919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위 법원이 2014. 6. 26. C 등이 E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E은 2015. 5. 20.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F이 1/2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나5065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E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와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고와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택순

별지